제217회 거창군의회 <정 례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6-30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6-3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32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3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민선6기 하반기의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조직안정을 기하면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며 능동적,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과소명을 변경함(안 제3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실, 창조산업과 ⇒ 기업도시과,
 승강기경제과 ⇒ 경제교통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녹색환경과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나.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제7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획감사실 ⇒ 행정과
- 기업관련 업무 조정: 승강기경제과 ⇒ 기업도시과
- 교통 및 운수: 안전총괄과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행사 기획·유치: 문 화 센 터 ⇒ 문화관광과
- 박물관, 문화원사, 무형문화재: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산업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평생교육진흥 및 기획: 창조산업과 ⇒ 평생교육센터
- 항노화산업: 창 조 산 업 과 ⇒ 농업기술센터
- 도서관 업무: 문 화 관 광 과 ⇒ 평생교육센터
- 청소년 업무: 체육청소년사업소 ⇒ 평생교육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실"로 "창조산업과"를 "기업도시과"로 "승강기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과"로 하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하며, 바목(종전 사목) 중 "규제개혁 추진"을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외의 본문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가목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복지정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공무원 후생 및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외의 본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업도시과장
- 가. 현안 및 역점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창구민원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 마.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가목 중 "안전관리 업무 총괄"을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목 중 "인적·사회적 재난"을 "인적·물적·사회적 재난"으로 하고, 라목(종전 마목) 중 "민방위 및 120봉사대"를 "민방위"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경제교통과장
- 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나. 일자리 및 고용에 관한 사항
- 나.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다. 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9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에 관한 사항
- 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0호 각 목외의 본문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임산물 및 화강석산업 생산·육성에 관한 사항
- 마.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1호 각 목외의 본문 "녹색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마.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3호 나목 중 "자전거도로 개설 및"을 "자전거"로 한다.

제7조제14호, 제16호,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 16.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 18.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 19. 항노화산업에 관한 사항
- 20. 항노화작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1. 농산물수출에 관한 사항
-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8조·제10조"를 "제10조·제13조"로 하고, "제7조· 제8조"를 "제8조·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4장 중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제2절 수도사업소"로 하고, "제2절 문화센터"를 "제1절 평생교육센터"로 하며, 제3절을 제4절로 하고, "제4절 체육청소년사업소"를 "제3절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4조(종전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종전 제1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2조(종전 제15조) 중 "문화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하며, 제11조(종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둔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에 둔다.

제13조(종전 제1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7조(종전 제20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종전 제21조) 중 "체육청소년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하고, 제19조(종전 제2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5항"을 "제3항 및 제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창조산업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제8호·제10호 중 "창조산업과"를 "평생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센터"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②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③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④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⑥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⑦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⑧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장, 경제과장"을 "복지정책실장, 행정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 ①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을 "복지정책실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복지정책실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①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전총괄과장"을 "복지정책실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복지 정책실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③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을 "복지정책실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한다.
- ①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 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복지정책실, 행정과, 기업도시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총괄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로 한다.

- (5)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 ⑥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창조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업도시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①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을 삭제한다.
- (8)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 ①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창조정책과"를 "평생교육센터"로 한다.
- ②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업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경제과장"을 "기업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유치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 ②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과장"을 "기업도시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②6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농촌진흥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③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u>거함대로 3079</u>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주상면 일원
웅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웅양면 <u>원촌4길 14-9</u>	웅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6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313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u>원학길 325</u>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5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u>수남로 1827</u>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 <u>4길 19-27</u>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9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26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u>37</u>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4-11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강천장교길 19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하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하곡1길 3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봉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하구송길 33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804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u>송계로 1205</u>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u>덕유월성로 1439-14</u>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동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u>881</u>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4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41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u>5</u>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1길 <u>20</u>	춘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u>735-15</u>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u>20</u>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중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3길 4	원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u>가조가야로 1439</u>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717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54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생 략)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 • 면
소장,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인 읍 • 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제3조(실・과의 설치) ①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u>주민생활지원실</u> ,	복지정책실
행정과, <u>창조산업과</u> , 재무과, 민원봉사과,	<u>기업도시과</u>
인전총괄과, <u>승강기경제과</u> , 문화관광과, <u>신림녹지과</u> ,	<u>경제교통과</u> <u>산림과,</u>
<u>녹색환경과,</u>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환경과,
② 실장・과장의 분장시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
1. 기획감사실장	1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u><삭 제></u>
<u>사. 규제개혁 추진</u> 에 관한 사항	<u>바. 규제개혁</u>
2. 주민생활지원실장	2. 복지정책실장
가. <u>주민생활지원서비스</u> 의 종합계획	가. <u>복지정책</u>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3. 행정과장	3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무원 후생 및 공무원단체 운영
후생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라. ~ 마. (생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창조산업과장	<u>4. 기업도시과장</u> 기 점시 및 연기기원 경기세 기원 기원
가. 창조도시 전략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시항	가. 현안 및 역점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창조도시 관련 문화산업 육성업무	
	다.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자립도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u>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u> 마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 정 안 혂 했 6. -----6. 민원봉사과장 가. 창구민원과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가. 창구민원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7. 안전총괄과장 가.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총괄에 가. 안전관리업무 총괄 관한 사항 나. 인적・물적・사회적 재난-----나. 인적·사회적 재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마. 민방위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CCTV관제에 관한 사항 8. 승강기경제과장 8. 경제교통과장 가. 사회적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시항 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나. 일자리 및 고용에 관한 사항 나. 숭강기신업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시항 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다.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라.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라. 교통 및 운수에 관한 사항 마. 투자, 통상협력, 국내외 시장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9. 문화관광과장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라.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에 관한 사항 마. 문화센터,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신 설> 문화원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림녹지과장 10. 산림과장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등 푸른 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창 조성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신 설> □ 마.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라. 임산물 및 화강석산업 생산·육성에

라. 임산물 및 화강석 육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11. 녹색환경과장 가. (생 략) 나. 폐기물 관리, 자연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라.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신 설>	다. (현행과 같음)
13. 도시건축과장 가. (생 략) 나. <u>자전거도로 개설 및</u>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 마. (생 략)	13 가. (현행과 같음)
<u><신</u> 설> <u><신</u> 설>	 1. ~ 13.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제13조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u>제9조</u> 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 ③ (생략)	

개 정 안 혅 했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2절 수도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제14조(설치) ①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u>수도사업소</u>----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② 수도사업소-----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2조(소장) 상히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제15조(소장) 수도사업소-----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생략)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2절 문화센터 제1절 평생교육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편의와 서비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스제공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둔다. 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둔다. ② 문화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② 평생교육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181에 둔다. 6길 11에 둔다. <u>제15조(소장)</u> 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제12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소관시무) -----제16조(소관시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1.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 제4절-----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9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절 체육청소년사업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3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7조(설치) ①
제21조(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8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2. (생 략) 3.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소관사무)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 <u>제3항·제4항</u>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법 <u>제4조제3항</u> 에 따른 읍·면의 명 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설치) ① <u>제3항</u> 및 제4조의2 ② <u>제4조의2</u>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3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조직진단 결과반영 및 민선6기 하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 증원
 - 현행: <u>598명(본청278명</u>, 의회11명, <u>직속기관94명</u>, <u>사업소43명</u>, 읍36명, 면136명)
 - 조정: <u>599명(본청263명</u>, 의회11명, <u>직속기관100명</u>, <u>사업소48명</u>, 읍39명, 면138명)
 - 나. 연구직 정원: 1명 감원
 - 현행: 6명(본청1명, 직속기관3명, 사업소2명)
 - 조정: <u>5명(본청2명, 직속기관2명, 사업소1명)</u>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가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_			직속기관	-		0	_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습	면	
茎。	총 계		281 295	14	133 128	70 65	63	53 49	40 37	149 147	
정보	정무직		1								
	소계	638 637	277 292	14	106 100	43 37	63	52 47	40 37	149 147	
	4급	1	1								
일 반 직	4~5 급	3	2		1		1				
의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9 598	263 278	11	100 94	39 33	61	48 43	39 36	138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구직 구사)	5 6	2 1		2 3	2 3		1 2			
	도직 도사)	25			25	25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3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에 따른 서식 변경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나.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협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5. 09. ~ 5.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4호·제5호서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자)											
			(3)군번 (군인의 경우)									
(2) <u>생년월일(성별)</u>												
(4)본국(국적)												
(5)주 소												
(6) 직	업			(7)	소	2			€	<u> </u>		
(8) 직	위	(9	(9) 등 급 (직급·계급) (10) 근무기 (수공기									
(11) 공적요지(50지	· 내외)	(1	12) 공적 분야코드 -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人	}		;	자						
(15)소 속			(16)	직	위							
(17)직 급			(17)	성	명						(1
위의 기록이 틀	님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추천	년 관 직위		월		명	일			직인			

포 상 대 장

	포 상	포 상	포 상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된 기 넘 품		
호수	연월일	종 별	기 관	직위또는 직명 명	소속또는 주 소	성 명	<u>성</u> 별	공적 개요	또는부상	참고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3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문 삭제(안 제26조)
- 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50조제2항, 제54조제2호)
- 라.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2항제3호)
-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5항)
-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 3)
- 사.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8)
- 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용도지역 확대(안 별표 3 ~ 별표 5,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 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3. 29. ~ 4.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설"을 "그 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35조·제37조·제38조의 각 호 외 본문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하였을 것
 -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19호 본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자연녹지지역내의"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55조 본문 중"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6조의3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56조의4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6조의5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5호"로 한다.

제56조의6 중 "영 제84조제5항제6호"를 "영 제84조제6항제6호"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의4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했 혂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 제>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기구(영 제42조의2제2항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삭제 2014.10.01>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 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에 따른다.-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 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 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동시설

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 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하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 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삭 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 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u>에 따라</u> <u>각 호의 어느 하나</u>
1
2
<u>한정한다)</u>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 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항에 따른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u>영 부칙</u>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u>「경상남도 도시계획에</u>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따라 자연경관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u>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u>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u>영</u>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 제1항에 따라	
 1. ~ 23. (현행과 같음)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u>「경상남도 도시계획</u> 조례」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u>「경상남도 도시계획에</u>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u>「경상남도 도시계획</u> <u>에 관한 조례」</u>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 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u> </u>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
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① (생략)
- 1. ~ 18. (생략)
-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20. ~ 21. (생략)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였을 것
-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 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 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 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① (현행과 같음)
- 1. ~ 18. (현행과 같음)
- 19. ----
- <삭 제>
- 20. ~ 21.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에 불구하고 <u>영 제84조제8항</u>에 따라 <u>자연녹지지역내의</u>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 로 한다.

④ (생략)

〈신 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0퍼센트 이하 4. ~ 5. (생 략)

제55조(건폐율의 강화) <u>영</u>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

1. ~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 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84조제9항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u>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 퍼센트 이하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퍼센트

3.----

60퍼센트--

4. ~ 5. (현행과 같음)

제55조(건폐율의 강화) <u>영 제84조제5항</u> -----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 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1호</u>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 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2호</u>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5항제3호</u>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 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3호</u>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가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4호</u>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5항제5호</u>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6항제5호</u>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 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 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 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 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 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 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u>영 제84조제7항</u>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u>영 제93조제6항</u>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한정한다)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20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발 2. ~ 3. (생략) ② ~ ⑤ (생략)

<u>한성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분과위원회) ①
1이 조례 제20조 제1항제2호 전단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 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u>같은 호</u>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정**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나목의 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지식산업센터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u>에 따른</u>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u>같은</u>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마.「폐기물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소음·진동<u>관리법</u>」제7조<u>에 따른</u>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 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

정하였을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 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 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나목을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마목을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동호 다목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9. <u>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u>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시목에 한정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주기장은 제외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 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 장은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 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과 기존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개축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u>같은 호</u> 가목·사목· 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 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폐기물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7. 「거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u>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u>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다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u>별표 1의3</u>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 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후계농업경영인·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수산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